

구 분	직 위	성 명	연락처
책 임 자	상임이사	김훈범	064-782-3135
작 성 자	2급	강기혁	064-784-3135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2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 및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5조제2호, 제170조제1호)

2. 공시대상

- 대 상 : 상임이사 김**
- 사유발생일자 : 2023.01.09
- 경 위 :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소홀
- 주 요 내 용 : 경고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총 대출금중 매각 대금 및 변상금액을 제외한 48백만원에 대한 손실예상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



구 분	직 위	성 명	연락처
책 임 자	상임이사	김훈범	064-782-3135
작 성 자	2급	강기혁	064-784-3135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2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 및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5조제2호, 제170조제2호)

2. 공시대상

- 대 상 : 지점장 한**
- 사유발생일자 : 2023.01.09
- 경 위 :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
- 주 요 내 용 : 견책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총 대출금중 매각 대금 및 변상금액을 제외한 48백만원에 대한 손실예상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(직인)



구 분	직 위	성 명	연락처
책 임 자	상임이사	김훈범	064-782-3135
작 성 자	2급	강기혁	064-784-3135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2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 및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5조제2호, 제170조제2호)

2. 공시대상

- 대 상 : 지점장 한**외 2명
- 사유발생일자 : 2023.01.09
- 경 위 :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
- 주 요 내 용 : 지점장 한** 2,848천원, 과장 최** 1,710원, 주임 서** 1,139천원 변상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총 변상금액 중 관련자 변상금액 5,697천원을 제외한 48,384천원에 대한 손실 예상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(직인)

구 분	직 위	성 명	연락처
책 임 자	상임이사	김훈범	064-782-3135
작 성 자	2급	장기혁	064-784-3135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2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 및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5조제4호)

2. 공시대상

- 대 상 : 성산포조합
- 사유발생일자 : 2023.01.09
- 경 위 : 주택건설자금대출 채권보조 조치 소홀
- 주 요 내 용 : 차주 황**, 황**, 김**, 김**의 대출금 조속히 회수 및 추가 담보제공하기 바람
- 수지에 미치는 영향: 회수 및 추가 담보를 통해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(직인)



구 분	직 위	성 명	연락처
책 임 자	상임이사	김훈범	064-782-3135
작 성 자	2급	강기혁	064-784-3135

경 영 (수 시) 공 시

본 수협은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83조의2,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 및 「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공시사유 : 「상호금융업감독규정」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(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145조제4호)

2. 공시대상

- 대 상 : 성산포조합
- 사유발생일자 : 2023.01.09
- 경 위 : 장기체화 재고자산 관리 소홀
- 주 요 내 용 : 473백만원의 장기체화 재고자산을 보유 하고 있어 조속히 판매하기 바람
- 수지에 미치는 영향: 판매를 통해 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장 (직인)

